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98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최수진·김예지·김미애

임이자·박준태·김민전

고동진 · 성일종 · 서지영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'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'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, '유전자변형생물체'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 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·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 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, 수입승인, 생산승인, 이용승인 등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'유전자교정생물체(GEO, Genome Edited Organisms)'는 '유전자변형생물체'와 달리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 이에따라 미국, 일본,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남미,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는 '유전자교정생물체'를 '유전자변형생물체'와 구분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, EU도 '유전자교정생물체'의 위해 수준에 비례하여 규제

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'유전자교정생물체'가 현행법상 '유전자변형 생물체'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,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'유전자교정생물체'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유 전자교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'유전자변형생물체'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'유전자변형생물체'와 구분되는 '유전자교정생물체'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'유전자교정생물체'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·제2호의2 및 제3조제2항 신설).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"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"을 "유전자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"유전자교정생물체"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대 생명공학기술 중 유전자가위 등 전통육종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비병원성 생물체를 말한다.
 - 가.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교정생 물체를 만든 경우
 - 나.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였으나 최종 산물인 유전 자교정생물체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유전자변형생물체"란 다음	2
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	
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	
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	
를 말한다.	
가.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	가. <u>유전자를</u>
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	
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	
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	_
입하는 기술	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"유전자교정생물체"란 다
	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
	서 현대생명공학기술 중 유전
	자가위 등 전통육종 수준의
	<u>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</u>
	을 이용하여 개발한 비병원성
	생물체를 말한다.
	가.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
	자를 도입하지 아니하고

3. ~ 5. (생 략) 제3조(적용 범위) (생 략)

<신 설>

<u>유전자교정생물체를 만든</u> <u>경우</u>

나.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 자를 도입하였으나 최종 산물인 유전자교정생물체 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 지 아니한 경우

<u>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</u> 하는 경우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적용 범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